

#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	12-95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12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 사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 조례의 일몰제 규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「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, 법률용어 정비에 따른 일부 조문의 표현을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### 가.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(안 제4조의2 신설)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, 존속기한이 경과 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 연장

### 나.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시행일 규정(부칙안)

- 존속기한을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

### 다. 그 밖에 법제처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정비

## 3. 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## 4. 참고 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- 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## 5. 기타 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2. 10. 8 ~ 10. 29 (제출의견 없음)
- 나. 자치법규 부폐영향 자율평가 검토결과 :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  
충돌방지 규정 마련 권고
  - 1) 안 제5조에 제5항과 제6항 신설 : 위원의 기피, 해촉 규정 반영
- 다.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: 원안동의
- 라.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마. 신구조문 대비표 1부.

##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”로, “노인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을 “노인복지기금”으로, “관리운용에 관하여”를 “관리 · 운용에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4. 그 밖의 수익금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하기 위한 각호의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”를 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에 사용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지도육성”을 “육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예탁 관리하도록 하여야”를 “예탁 · 관리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,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인을 포함한 10인”을 “1명을 포함한 10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각호의 자로한다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위촉한”을 “위촉”으로, “하되”를 “하되, 한차례만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### 3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2명

제5조제4항 중 “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항에 따른 위촉”으로, “전임자의 임기”를 “전임위원의 남은 기간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,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⑥ 위원이 제5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구청장은 매회계년도”를 “구청장은 회계연도”로, “출납

폐쇄후”를 “출납폐쇄 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매회계년도”를 “회계연도”로, “마포 구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”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회의록등)”을 “(회의록 등)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1인과 서기 1인”을 “1명과 서기 1명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지방재정법 ·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재무회계 규칙”을 “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4조의2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</u>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금의 조성) <u>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u></p> <p>1. ~ 3. (생 략) 4. 기타 수익금</p> <p>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각호의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.</p> <p>1.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회 <u>지도육성</u> 2. ~ 6. (생 략) 7.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</p>	<p><u>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제<u>142조에</u> 따라 ----- ----- <u>노인복지기금</u>----- ----- <u>관리·운용에</u> ----- -----.</p> <p>제2조(기금의 조성)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</u>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그 밖의 수익금</p> <p>제3조(기금의 용도) ----- -----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에 사용한다.</p> <p>1. ----- <u>육성</u> 2. ~ 6. (현행과 같음) 7. 그 밖의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기금의 관리 · 운용) ① (생략)</p> <p>②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<u>예탁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원한다.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4조(기금의 관리 · 운용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예탁 · 관리하여야 -----.</u></p> <p>③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.</p> <p>제4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,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
<p>제5조(기금운용 심의위원회) ① 기금의 관리 ·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<u>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 <u>1인을 포함한 10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며,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한다. 단,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<u>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· 2. (생략)</p>	<p>제5조(기금운용 심의위원회) ① -----</p> <p>-----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----- <u>1명을 포함한 10명</u> -----.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----- <u>위촉</u> -----</p> <p>----- <u>하되, 한차례만</u>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3. 마포구의회 의원2명</u></p> <p><u>4. 기타 노인복지관련 단체장 및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</u></p> <p>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<u>전임자의 임기</u>로 한다.</p>	<p><u>3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명</u></p> <p><u>4. 그 밖에</u>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위촉 <u>전임위원의 남은 기간</u>.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· 2. (생 략)</li> <li>3. 기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</li> </ol> <p>제10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	<p><u>5.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,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⑥ 위원이 제5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위원회의 기능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각 호</li> <li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3. 그 밖의</li> </ul> <p>제10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</p> <p>구청장은 회계연도</p> <p>출납폐쇄 후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<u>마포구의회</u>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11조(회의록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제12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·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14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·지출·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<u>지방재정법·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재무회계규칙</u>을 준용한다.</p> <p>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<u>시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② ----- 제1항에 따른 ----- ----- 회계연도 ----- ----- 서 울특별시 마포구의회 -----.</p> <p>제11조(회의록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간사) ① ----- 1명 과 서기 1명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수당 등) ----- ----- 범위 -----.</p> <p>제14조(준용) ----- -----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 -----.</p> <p>제15조(시행규칙) ----- <u>시행</u>에 -----.</p>